

※ □는 해당 란에 √표시하며,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 × 297mm [일반용지] 60g/m² (재활용품)

제출하는 곳	대행검사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급법인)	처리부서	지역별 사무소
수 수 료	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	처리기간	25일
유 의 사 항	☐ 벌칙 규정 ○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☐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및 그 시기 ○ 최초검사: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○ 정기검사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○ 중간검사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 ○ 연차검사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(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) ○ 임시검사: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,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검사 ☐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○ 선박의 정기검사, 중간검사,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○ 위험물을 적재·운송하거나 저장하려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○ 유조선·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(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)의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○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○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		